

기안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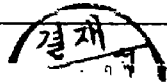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-249	(전화: 731-6393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(준영구) 10.5.3.1	시장	
수신처 보존기간	준영구	결재	
시행일자	'86. 7	사무장	
보조 기간	부지 지정 관 지 관 지 관 지 관	협조 기	1986. 8. 26
기안책임자	개량2계장 심관홍	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	1986. 8. 26
경유 수신 참조	각안 참조	접수	1986. 8. 26
제목	상계 제4주 택개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및 고시		
(제1안) 내부 결재	고시제 622		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 11. 22)로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정토지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 (86. 3. 21)로 지적고시된 상계 제4구역에 대하여			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(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) 및 제6조 (재개발사업 계획의 기준)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(권한의 위임) 제1항			
3호 및 제56조 (특례) 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고,			
같은 법 시행령 제6조 (재개발사업 계획의 결정고시)의 규정에 의거 별안			
(제2안)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첨 부 : 상계 제4주 택개발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도서 1부			
(제2안) 고시안	1986. 8. 26		
서울특별시 고시 제	오	관	관
상계 제4주 택개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			

1. 건설부고시 제512호(85. 11. 22)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(86. 3. 21)로 지적 고시된 상계 제4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6년 8월 1일



서울특별시 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및 제2지구  
주택개량 재개발사업

나. 구 역 명 : 상계 제4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제1지구 및  
제2지구

다. 면 적 : 80,116 m<sup>2</sup> - 제1지구 : 51,739 m<sup>2</sup>  
- 제2지구 : 28,377 m<sup>2</sup>

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별첨도서 및 도면 표시와 같음(생략)

마. 건축계획

구 분	건 택 율	용 적 율	높 이	주 된 용 도
상계4-1지구	28% 이하	280% 이하	45 m 이하	공동주택
상계4-2지구	25% 이하	260% 이하	45 m 이하	공동주택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1. 적의시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고시안 사본 2부 끝.
(제4안)
수신 : 건설부장관
참조 : 도시개발과장
제목 :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(보고)
1. 건설부고시 제512호 (85. 11. 22)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 (86. 3. 21)로 지적고시된 상계 제4주 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56조 및 5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2.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 1부
(제5안)
수신 : 도봉구청장
참조 : 주택과장
제목 :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고시(동보)
1. 귀구 관내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하였기 그 내용을 동보하오니
2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 발급 등 도시계획

관련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함 것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

(제6안) — 898

수신 : 시설계획과장, 도시계획과장      발신 : 과장

제목 : 상계 제4 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(동보)

1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위거  
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 
동보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상계 제4주 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 1부 공.

상계 제4주 택개발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도서

1. 계획대상


- 가. 재개발사업의명칭 : 상계 제4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
- 나. 구 역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172, 173번지 일원
- 다. 계 획 면 적 : 80,116 m<sup>2</sup>
- 라. 정비 대상 건물 : 1,901동

2. 사업계획 기본방향

- .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지구 분할 시행
- . 지구별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

3. 부분별 사업계획 결정조서

가.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(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)

지구명	상계제4구역제1지구	상계제4구역 제2지구
내 용	서울·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일원	서울·도봉구 상계동 80, 172번지 일원
외 		
계 획 면 적	51,739 m <sup>2</sup>	28,377 m <sup>2</sup>
정비 대상 건물	1,528동	373 동

나. 토지 이용 계획

용 도	계		제 1 지구		제 2 지구	
	면적( m <sup>2</sup> )	%	면적( m <sup>2</sup> )	%	면적( m <sup>2</sup> )	%
계	80,116	100	51,739	100	28,377	100
택 지	66,903	83.5	42,848	82.8	24,055	84.8
도 로	6,734	8.4	2,412	4.7	4,322	15.2
존 치	6,479	8.1	6,479	12.5	-	

다. 공공시설 정비계획

1) 도 로 :

노 선 명	폭원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결정근거	비 고
중로 1류 1호선	20	125	지구계	지구계	건고치198호 (71.4.7)	기 결정
중로 1류 2호선	20	150				신 설
중로 2류 1호선	15	70			건고치198호 (71.4.7)	기 결정
소로 2류 1호선	8	52		중로 1류 2호선		일부신설

라. 건축물 정비계획

구 분	제 1 지 구	제 2 지 구
건축시설주용도	공동주택	공동주택
건 때 율	28% 이하	25% 이하
용 적 율	280% 이하	260% 이하
층수 및 높이	15층이하, 45m 이하	15층이하, 45m 이하

\* 첨부 : 삼기 제 4구역 사업계획 결정도

우시장